## 캄보디아 FTA 활용 안니

대 캄보디아 FTA 현황

$\rightarrow$ RCEP
RCEP


## 2007년 발효

## 2022년 2월 발효

## 2021년체결

캄보디아 FTA 활용 안내
한-아세안 FTA vs RCEP
(ㅇ) 한-아세안 FTA 협정문
라.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4) 각 당사국은 2020 년 1 월 1 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민감 품목 : 모든 관세 품목의 $10 \%$
초민감 품목 : 모든 관세 품목의 3\% or 200개의 관세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양국은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 캄보디아는 $93.8 \%$ 의 관세를 철폐


화물차


승용차


## RCEP 양허세율 표



승용차 Hs code

| ATTN 쿄드 |  | $\begin{array}{\|l\|l\|} \hline \text { 귤 } \\ \end{array}$ | 1분져 | 2때자 | 3년차 | 4는차 | 5년차 | 6땐차 | 7년차 | 8변자 | 9배ㄴㅏㅏ | 10애자 | 11변차 | 12배ㅈㅏㅏ | 13번재 | 144볓 | 15내새 | 16변자 | 17내새 | 18변자 | 194재자 | 20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9.23.93 |  | 353 | 358 | 31.5 | 31.53 | 28. | 283 | 24.5 | 24.58 | 215 | 213 | 17.5 | 17.5 8 | $14 \times$ | 145 | 10.5 | 10.58 | 78 | 73 | 3.5 | 3.5 | 0\% | 8703.23



## FTA 활용 프로세스



## 캄보디아 FTA 활용 안내

## FTA 활용 방법

## STEP 1 Hs code 확인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1 캄보디아의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 URL : https://customs.gov.kh/en



## 캄보디아 FTA 활용 안내

## FTA 활용 방법

## STEP 2 관세율 확인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 예시 덤프차의 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하는 경우

| Head | Tariff code | Description of Goods | Unit | Duty and Tax (\%) |  |  |  | T |
| :---: | :---: | :---: | :---: | :---: | :---: | :---: | :---: | :---: |
|  |  |  |  | Imp. |  |  | $\begin{gathered} \text { Exp. } \\ \hline \text { ET } \end{gathered}$ |  |
|  |  |  |  | CD | ST | VAT |  |  |
| 87.04 | 8704.10 | - Dumpers designed for-highway use | u |  |  |  |  |  |
| 87.04 | 8704.10.13 | -- g.v.w. not exceeding 5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14 | - - g.v.w. exceeding 5 t but not exceeding 10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15 | -- g.v.w. exceeding 10 t but not exceeding 20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16 | -- g.v.w. exceeding 20 t but not exceeding 24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17 | - - g.v.w. exceeding 24 t but not exceeding 45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18 | -- g.v.w. exceeding 45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31 | -- g.v.w. not exceeding 5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32 | - - g.v.w. exceeding 5 t but not exceeding 10 t | u | 15 | 30 | 10 | 0 |  |
| 87.04 | 8704.10.33 | -- g.v.w. exceeding 10 t but not exceeding 20 t | u | 15 | 30 | 10 | 0 |  |

## 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관세(CD), 부가세(VAT) 확인 가능

[^0]
## 캄보디아 FTA 활용 안내

## FTA 활용 방법

## STEP 2 관세율 확인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 예시 승용차의 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하는 경우

| Head | Tariff code | Description of Goods | Unit | Duty and Tax (\%) |  |  |  | T |
| :---: | :---: | :---: | :---: | :---: | :---: | :---: | :---: | :---: |
|  |  |  |  | Imp. |  |  | Exp. |  |
|  |  |  |  | CD | ST | VAT | ET |  |
| 87.03 | 8704.23 | -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3,000 cc : |  |  |  |  |  |  |
| 87.03 | 8703.23.21 | -- -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1,800 \mathrm{cc}$ | u | 15 | 50 | 10 | 0 |  |
| 87.03 | 8703.23.22 |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800 cc but not exceeding 2,000 cc | u | 15 | 50 | 10 | 0 |  |
| 87.03 | 8703.23.23 | -- -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000 cc but not exceeding 2,500 cc | u | 15 | 50 | 10 | 0 |  |
| 87.03 | 8703.23.24 | -- - -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0 cc | u | 15 | 50 | 10 | 0 |  |
| 87.03 | 8703.23.31 | --- - -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cc but not exceeding 1,800 cc | u | 15 | 50 | 10 | 0 |  |

## $\checkmark$ 물품 상세별 HS 세분류, 관세(CD), 부가세(VAT) 확인 가능

[^1]
## 캄보디아 FTA 활용 안내

## FTA 활용 방법

## STEP 3 FTA 양허 세율 확인

2 FTA 관세 양허 세율 확인 방법

-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FTA별 양허세율 확인
- URL : http://www.tradenavi.or.kr




FTA 활용 방법

## STEP 3 대 캄보디아 수출 FTA 활용 예시 (한->캄)



| 1 | 20274 | $35 \%$ |  | 15\% |
| :---: | :---: | :---: | :---: | :---: |
|  | 2034 |  | 15\% | 13.5\% |
|  | 202441 |  | 12\% | 13.5\% |
|  | (20354 |  | 12\% | 12\% |
|  | 2074 |  | 12\% | 10.5\% |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후 수입통관 (일반적인 절차)
(1)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2) 수입신고
(3) FTA 특혜관세 적용

(B)
수입통관 후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사후신청 절차)
(1) 수입신고


적용 및 환급 (수입신고 수리일 1년 이내)

## 캄보디아 FTA 활용 안내

## FTA 활용 방법

## STEP 6 관련서류 보관

* FTA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RCEP협정문 3장 제27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3 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 - 수입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생산자 보관서류

- 원산지증명시 작성, 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 출납, 재고관리대장


## 수출자 보관서류

- 생산자 보관서류 외
-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of 돈

[^2]1 한-아세안 FTA 협정문
(2) 산업통상자원부 한-캄FTA 보도자료('21.2.4)
3) RCEP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
4) 캄보디아 관세청 Hs code 및 관세율 검색 링크

5 트레이드네비 FTA별 양허세율 검색 링크
6) RCEP 활용 가이드(유튜브 영상) 링크
(7) RCEP 실무활용 가이드(문서)

## 감 사 합 니 다



Kotra 프놈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 김도현 과장(g8@kotra,or.kr, 0707748 7990)
 Promotion Agency

## 주제1. 중고 제품도 FTA 적용 가능?

## 회물자동차 : 대 캄보디아 수출 3 위 품목

- 무역협회 통계 (2021년) MTI 4단계 분류

```
[M] 매이ᄅ겨ᄋ제
다ᄂ조ᄋ 구ᄀ사ᄂ차, 자ᄅ 파ᄅ리느ᄂ 나라 2위느ᄂ 카ᄆ보디아...1위느ᄂ?
주ᄋ고차 수추ᄅ에느ᄂ 해다ᄋ 구ᄀ가의 여ᄂ시ᄀ 제하ᄂ과 수이ᄇ 과ᄂ세가 겨ᄅ저ᄋ저ᄀ이ᄂ 여ᄀ하ᄅ으ᄅ 하ᄂ다.
수추ᄐ 1위이ᄂ 리비아와 2위이ᄂ 카ᄆ보디아의 겨ᄋ우 여ᄂ시ᄀ 제하ᄂ이 어ᄡ어 구ᄀ내에서느ᄂ.
Feb 10, 2020
```



리비아는 2013년 이후 6 년 연속 한국의
중고차 수출 국가 1 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 위는 캄보디아(2만4761대)였다. 가나 (2만2128대)와 도미니카공화국(1만8998대)이 뒤를 이었다.

2019년 2월 한경닷컴

## 주제2. 인증 수출자인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 직접 발행?

웅 인증수출자
인중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중명 능력이 였다고 인종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종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RCEP 실무활용 가이드북


## 주제3. 누적원산지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무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패널 토론

## 주제4. 사후신청절차

(1) 수입통관 후 FTA 원산지증명서 입수 (사후신청 절차)
(1) 수입신고

(4) FTA 특혀관세

적용 및 환급
(수입신고 수리일 1년 이내)


[^0]:    * HS CODE는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함
    *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1]:    * HS CODE는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함
    * 따라서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함

[^2]:    *자료: FTA 특례법 시행령 10조

